

[57회 대비] 상표법 기초 GS 강의계획서



강사 소개

55회(18') 합격

한경훈 변리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hooneetrade@gmail.com

강의 소개

상표법이 다른 법들과 다르게 느껴져서 막막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표법은 실체법에 가까워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실체”에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쟁점을 풀어내는 논리**”입니다. 암기된 지식이 다소 적더라도, 쟁점을 찾고 문장을 구사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하여 상표법 전 범위를 정리함과 동시에 “**글의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강의 특징

- [수업자료] 문제, 답안 및 보충자료 (6회분) 배부
- [수업교재] THEMIS 상표법 (1판) **[교재 예시 수록]**
- [문제구성] A급 판례 기반 문제와 사례형 문제로 구성
- [채점방식] 답안의 **흐름**에 대한 코멘트 제공
- [강의구성] 중요 개념을 중심으로 상표법 **전 범위 내용**을 함께 정리

진도표

1회	이론수업만 진행	5회	상표권, 심판
2회	이론수업만 진행	6회	심판, 소송, 특유표장
3회	총칙, 등록요건	7회	전 범위
4회	등록요건, 등록절차	8회	전 범위

시험 범위는 **노적**되며, 진도 외 개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THEMIS 상표법 (1판) Sample

테미스 상표법

1

상표법상 상표 및 사용의사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조문 수록

I. 상표법상 상표

1. 상품

상표법에는 상품의 개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상표제도의 목적과 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등을 참고하여 사회경제적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심사기준).

중요 개념 Box

'상품'에 관한 논점

[Note①]

1. 일반론

- ①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98후58 WINK 사건).
- ② 한편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성'과 '대체성'이 전제되므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무체물(ex, 열), 골동품, 금제품(ex, 마약·유가증권), 예술품 등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상품의 성질은 그 상품에 대해 사용되는 상표의 등록에 장애를 구성하지 않으며(파리조약 제7조), 타법령은 문제되지 않는다.

2.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구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98후58 WINK 사건).

3. 점포 등에서 소비되는 물품(ex: 음식점에서 주문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① 상표법상 상품은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데,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유통성이 없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하8861 독탄법 사건). 즉, 협의의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사용으로 본다.
- ② 다만, 회사에서 대량생산되어 음식점을 통해 유통되는 PB상품의 경우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

4. 법문상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

구법은 서비스표를 별도로 정의하였으나, ① '상표(商標)'의 '상(商)'이 본래 유형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며, ②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2016년 개정법에서 상표와 서비스표를 일원화하였다. ③ 이로써 상품과 서비스간 동종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배제효 및 사용금지효가 미칠 수 있음은 법문상 당연해졌다.

2. 자타상품식별을 위한 것

상품에 사용되어도 상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표장은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심사기준).

출처 표시

- ③ [외국어와 한글의 결합]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여지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 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98후2238).

(2) 도형상표

- ① [원칙] 도형상표는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므로 주로 외관에 의해 유사여부를 판단한다(93후1605).
- ② [일반적 거래실정 고려] '티셔츠 등 의류'의 거래에서는 도형상표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도형 전체의 모티프나 지배적인 인상을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다(2011후1548 닛 도형 사건).
- ③ [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한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강아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도형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상이한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는 도형상표의 경우에 그 외관의 유사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011다18802 아가타 사건).

(3)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判例 제목 명시

- ① [전체관찰의 원칙]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2017후2932 천 년구들 사건, 2017후2697 PINK&강아지 도형 사건).
- ② [도형 부분에도 요부관찰 적용 가부]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 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2017후2697 PINK&강아지 도형 사건).

(4) 상표의 일부분이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표의 구성요소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표장의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수요자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전체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상표의 유사 판단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해야 한다(91후1250 코롱 사건).

THEMIS 특허법 & 상표법 2020 강의계획

심재호 변리사

月	개설 강의	자 료	참 고
3월	실전A		
	기초	THEMIS 특허법(1판)	
	콜라보A		A급 논점 위주
4월	3월과 동일		
5월	실전A		
	실전B		콜라보A+콜라보B
	콜라보B		기출 변형문제 포함
6월	5월과 동일		

- 강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한경훈 변리사

月	개설 강의	자 료	참 고
3월	실전A		
	기초	THEMIS 상표법(1판)	
	콜라보A		A급 논점 위주
4월	3월과 동일		
5월	실전A		
	실전B		콜라보A+콜라보B
	콜라보B		기출 변형문제 포함
6월	5월과 동일		

- 강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